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94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방부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중 “조직총괄담당관”을 각각 “국군조직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총괄담당관”을 “국군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국제평화협력과·다자안보정책과”를 “국제협력과·인도태평양정책과”로, “북한정책과장”을 “대북전략과장”으로, “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책과장”을 “국제협력과장·인도태평양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평가와 대북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통제
3.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
4. 북한 우발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5.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일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6. 대북현안 관련 정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7.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미국·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8.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9. 비무장지대(DMZ)·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10. 남북관리구역 및 군 통신선(전통문) 운용 관련 조정·통제
1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12.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제9조제1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평화협력과장”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자안보정책과장”을 “인도태평양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관련 지역협력

제10조제9항제11호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를 “국군체육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제11조제6항 중 “시설제도기술과”를 “시설제도과”로, “시설제도기술과장”을 “시설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설제도기술과장”을 “시설제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기반전력과 및 공통전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을 “기반전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을 “공통전력과장”으로 한다.

제3장(제12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3명(5급 2명, 8급 1명)”을 “2명(5급 2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7”을 “676”으로 하고, 행정서기·방호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위생서기 “55”를 “54”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14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생략)

⑧ 조직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3. (생략)

⑨ ~ ⑲ (생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 · 국방전략과 · 북한정책과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교육훈련정책과 · 정신전력정책과 · 국제정책과 · 미국정책과 · 동북아정책과 · 국제평화협력과 · 다자안보정책과 · 방위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 · 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 · 북한정책과장 · 교육훈련정책과장 · 정신전력정책과장 · 미국정책과장 · 방위정책과장 · 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국방전략과장 · 군비통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군조직담당관-----

-----.

1. ~ 13. (현행과 같음)

⑨ ~ ⑲ (현행과 같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대북전략과-----

-----국제협력과 · 인도태평양정책과-----

-----대북전략과장-----

제비확산정책과장 · 국제정책과장 · 동북아정책과장 · 국제평화협력과장 · 다자안보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⑧ (생략)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대북 · 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 · 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 · 평가 및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한 조정 · 통제
3.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관련 업무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5.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 · 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6.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 · 통제
7. 남북군사회담 대표 · 수행원

-----국제협력과장 · 인도태평양정책과장 ----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대북 · 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 · 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 · 평가와 대북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 · 시행 · 통제
3.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 · 통제
4. 북한 우발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5.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일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6. 대북현안 관련 정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7.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u>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의 지원·관리</u> 8. <u>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유지·준수 관련 업무</u> 9. <u>남북관리구역 및 군 통신선(전통문) 운용 관련 조정·통제</u> 10. <u>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u> 11. <u>대북현안 관련 정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u> 12. <u>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u> 13. <u>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미국·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u> 14. <u>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u> 15. <u>비무장지대(DMZ)·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u> 16. <u>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의 조정·통제</u>	<u>조정·통제 및 미국·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u> 8. <u>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u> 9. <u>비무장지대(DMZ)·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u> 10. <u>남북관리구역 및 군 통신선(전통문) 운용 관련 조정·통제</u> 11. <u>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u> 12. <u>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u>
---	--

⑩・⑪ (생략)	⑩・⑪ (현행과 같음)
⑫ 정신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군 <u>문화재</u> 보호 및 전사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 <u>국가유산</u> ----- -----
7. ~ 15. (생략)	7. ~ 15. (현행과 같음)
⑬ ~ ⑮ (생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⑯ <u>국제평화협력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u>국제협력과장</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⑰ <u>다자안보정책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u>인도태평양정책과장</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관련 지역협력</u>
⑱ ~ ㉑ (생략)	⑱ ~ ㉑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⑧ (생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6. 삭제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u>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u> 업무의 지도·감독	11. <u>국군체육부대</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략)

⑭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3. ~ 7. (생략)

⑮ (생략)

<16>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⑰ ~ ⑳ (생략)

제11조(자원관리실) ① ~ ④ (생략)

⑤ 삭제

⑥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군수지능화팀·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과·국유재산과·군주거정책과 및 환경소음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물자관리과장·재난안전관리과장·시설기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

1. ~ 7. (현행과 같음)

8.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⑰ ~ ⑳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원관리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⑥ -----

--시설제도과-----

획과장 · 시설제도기술과장 · 건설관리과장 · 부대건설과장 · 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 및 환경소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⑬ (생략)

⑭ 시설제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⑮ ~ ⑲ (생략)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① (생략)

② 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 · 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시설제도과장-----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시설제도과장-----

1. ~ 16. (현행과 같음)

⑮ ~ ⑲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반전력과 및 공통전력과-----

③ (생략)

④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⑤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

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및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반전력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⑤ 공통전력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유지와 조정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
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6. 교육장의 운영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
작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
집의 편찬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
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

---. -----

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5급 2명, 8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략)

국방부령 제114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방호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위생서기 1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2명(5급 2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14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1
	.		<u>677</u>	<u>676</u>	
	.		.	.	
	.		.	.	
행정서기 · 방호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			<u>55</u>	<u>54</u>	-1
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					
기 또는 위생서기					
	.		.	.	
	.		.	.	